##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52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신영대·허성무·홍기원

전재수 · 이해민 · 김정호

윤준병 • 백선희 • 한민수

강준현 · 임광현 · 김기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 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 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 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처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로서 자신이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처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로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